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0. 2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0월 6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9년 10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14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2009. 10. 2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시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재정·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와 사업시행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기업의 입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내용

- 1)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5조)
- 2)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을 위해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기 위한 사업과 국내·외 판로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6조)

- 3)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마케팅 및 수출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7조)
- 4) 공공기관의 발주 및 입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 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8조)
- 5)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 6)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등 요건을 충족하는 특화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안 제11조)
- 8)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 9) 기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 10) 활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거나 선행을 행한 기업인에게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음(안 제14조)

11)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

- 위원회는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또는 심의함.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명금길)

○ 동 조례안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하여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여 주기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 구 기업의 입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임.

< 개 요 >

동 조례안은 전문 제4장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2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제3장에서는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지막 제4장에서는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 >

- (1) 안 제5조에서는 창업자에게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
- (2)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제품 발굴

및 홍보 사업 국내외 판로개척, 해외시장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 양성, 특화산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

(3)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건전한 기업의 관련단체의 창립 권장과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재정지원,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우수기업 발굴.시상 등을 규정

(4)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검토의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기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여 경영 지원, 시설비 지원, 판로개척 및 홍보, 해외교류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공공 기관의 우선 구매, 조세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및 재정 지원 등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의 모색은 물론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이나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므로 혁신적인 도시환경조성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미래지향적으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 구에서도 관내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판단이고 올바른 정책방향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차목, 타목과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서 적정하게 작성된 조례안으로 사료됨

다만 안 제13조의 예산지원사항에 있어서는 각 항목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지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